

(주)제주항공 내부거래 위원회 규정

2021. 05. 11 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제주항공(이하 "회사"라고 한다)의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직무와 권한)

① 위원회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, 주요주주, 관계회사, 기타 이해관계자와 회사간의 거래(이하 "내부거래"라 한다)를 제 10조의 기준에 근거하여 심사 및 승인해야 한다.

- 1) 상법
- 2)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- 3)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- 4)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- 5)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

② 위원회는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이사 등과 회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사전 심사해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거래에 대해 회사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, 회사에 거래의 주요 내용, 계약방식 및 거래상대방 선정기준, 세부 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위원회 운영규정(이하 "본 규정"이라 한다)의 내용을 매년 검토하여,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의 개정을 이사회에 건의 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.

제4조(구성)

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사외이사는 위원총수 2/3이상으로 한다.

③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4조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 잔여

사외이사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, 잔여 사외이사가 없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한다. 단,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9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종류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.
-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 단, 의결사항이 없을 경우는 소집하지 않는다.

제7조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 일시,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8조 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.

제9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

제10조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 및 승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조 2 및 동 시행령 제 17조 8에서 정한 대규모 내부거래

- ② 회사가 제10조 1항의 대규모 내부거래의 주요 내용(거래의 목적 및 대상, 거래의 상대방, 거래의 금액 및 조건,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)을 변경하는 행위
- ③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 및 동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계열회사와 체결하는 분기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수의계약
-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.
 - 1)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로서 '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'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
 - 2) 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위원회에서 승인한 거래 단, 거래승인대상 및 거래승인의 업무 범위를 한정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.
 - 3) 위원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단, 위원회의 승인을 통한 거래총액의 한도는 본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, 거래총액 한도에 대해서는 각 회계연도에 4회씩 분기마다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다.
- ⑤ 제3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사전 심사
 - 1)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용에 해당하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
 - 2)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
-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단일 거래규모 및 거래총액을 산정함에 있어,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- ⑦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이나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 및 승인할 수 있다.

제11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제12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의사록은 이사회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.

제13조(통보의무)

위원회는 결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결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각 이사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4조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제15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